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검 토 보 고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2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법 제정 필요성 검토 .....                                          | 7  |
| 3 조문별 검토 .....                                               | 17 |
| 가. 총칙 (안 제1장 :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 17 |
| 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등<br>(안 제2장 :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 23 |
| 다.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br>(안 제3장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 28 |
| 라.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기반 조성 등<br>(안 제4장 :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 32 |

|                                                                  |    |
|------------------------------------------------------------------|----|
| 마.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br>(안 제5장 :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 37 |
| 바.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br>(안 제6장 :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 44 |
| 사.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br>(안 제7장 :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 50 |
| 아. 초광역권 자생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br>(안 제8장 :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 54 |
| <br>[참고] .....                                                   | 56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도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31.

다. 회 부 일 : 2024. 8.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일자리·복지·문화 향유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및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전국 228개 지역 중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음.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먹거리인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권역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기업의 육성·유치, 인재 양성·유치,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함.

특히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에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 및 지방 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8개의 장과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정안의 체계]

|                                                                                                                                                                                                                                                                                                                                                                                                                                                |                                                                                                                                                                                                                                                                                                                                                                                                                                                                                             |
|------------------------------------------------------------------------------------------------------------------------------------------------------------------------------------------------------------------------------------------------------------------------------------------------------------------------------------------------------------------------------------------------------------------------------------------------|---------------------------------------------------------------------------------------------------------------------------------------------------------------------------------------------------------------------------------------------------------------------------------------------------------------------------------------------------------------------------------------------------------------------------------------------------------------------------------------------|
|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p> <p>제2조(정의)</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등</b></p> <p>제5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p> <p>제6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제7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p> <p>제8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p> <p><b>제3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제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p> <p>제10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자실행계획의 수립)</p> | <p>제18조(미래혁신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및 투자의 확대)</p> <p>제19조(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의 추진)</p> <p><b>제5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b></p> <p>제20조(자금 지원 등)</p> <p>제21조(창업지원)</p> <p>제22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p> <p>제23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p> <p>제24조(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p> <p><b>제6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유치 지원 등</b></p> <p>제25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p> <p>제26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p> <p>제27조(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전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p> <p>제2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p> <p><b>제7장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b></p> |
|------------------------------------------------------------------------------------------------------------------------------------------------------------------------------------------------------------------------------------------------------------------------------------------------------------------------------------------------------------------------------------------------------------------------------------------------|---------------------------------------------------------------------------------------------------------------------------------------------------------------------------------------------------------------------------------------------------------------------------------------------------------------------------------------------------------------------------------------------------------------------------------------------------------------------------------------------|

|                                          |                                    |
|------------------------------------------|------------------------------------|
| 제11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의 동시 수립) | 제2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   |
| 제12조(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설치)                     | 제30조(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등)        |
| <b>제4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기반조성 등</b>       | 제31조(해외 우수인력 신속입국·영주·귀화 특례 지원)     |
| 제13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 제32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고용지원)          |
| 제14조(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b>제8장 초광역권 자생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b> |
| 제15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 제33조(초광역권 생활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원)     |
|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 제34조(초광역 단위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          |
| 제17조(교육기관의 지방이전)                         | 제35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b>총칙</b><br>(안 제1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b> : 이 법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비수도권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 및 지방 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li> <li>- <b>정의</b> :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미래혁신산업, 미래혁신인재 등</li> <li>- <b>책무</b> : 국가는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li> </ul>                                                                              |
| <b>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b><br>(안 제2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합계획 수립</b> : 기획재정부장관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 방안, 관련 인재의 양성 및 해외로부터의 유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li> <li>- <b>시행계획 수립</b>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함</li> <li>- <b>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b>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평가,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를 둠</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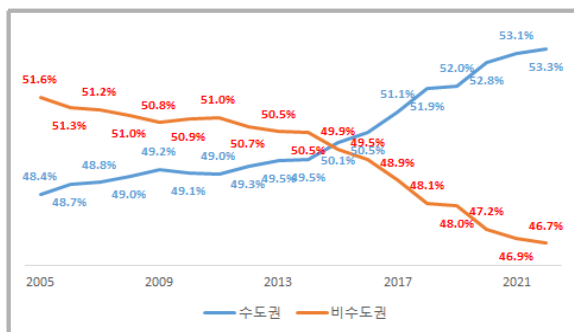
| 구 분                                                               | 주요내용                                                                                                                                                                                                                                                                                                                                                                                                                                                                                                                                          |
|-------------------------------------------------------------------|-----------------------------------------------------------------------------------------------------------------------------------------------------------------------------------------------------------------------------------------------------------------------------------------------------------------------------------------------------------------------------------------------------------------------------------------------------------------------------------------------------------------------------------------------|
| <p><b>초광역권<br/>미래혁신산업<br/>육성<br/>기본계획의<br/>수립</b><br/>(안 제3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계획 수립</b>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권역별 산업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li> <li>- <b>지원시행계획의 수립</b>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을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li> <li>- <b>미래혁신산업 위원회 설치</b>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 및 미래혁신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를 둠</li> </ul>                                                                                                                                            |
| <p><b>초광역권<br/>미래혁신산업<br/>선정 및 기반<br/>조성</b><br/>(안 제4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b>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발전 역량 강화 가능성,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등과 협의 및 미래혁신산업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 또는 시·도의 미래혁신산업을 선정</li> <li>- <b>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b> :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 증설·설치하는 기업 또는 초광역권에 대한 구축 비용 지원</li> <li>- <b>기업의 지방이전</b> :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 지원</li> <li>- <b>공공기관의 지방이전</b> : 수도권에 소재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li> <li>- <b>교육기관의 지방이전</b> : 수도권에 있는 교육기관이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관련 시설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li> </ul> |
| <p><b>초광역권<br/>미래혁신산업<br/>기업에 대한<br/>지원 및 특례</b><br/>(안 제5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금·창업 지원</b> : 미래혁신산업기업의 설비투자, 공장신설·증설 등을 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융자 등 지원</li> <li>- <b>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세제 지원</b> :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미래혁신산업의 발전·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li> <li>- <b>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b> : 미래혁신산업 기업 및 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립</li> </ul>                                                                                                                                                              |

| 구 분                                                       | 주요내용                                                                                                                                                                                                                                                                                  |
|-----------------------------------------------------------|---------------------------------------------------------------------------------------------------------------------------------------------------------------------------------------------------------------------------------------------------------------------------------------|
| <p><b>초광역권<br/>미래혁신산업<br/>인재 육성·유치</b><br/>(안 제6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시행 : 교육부장관은 미래 혁신산업 인재의 육성·외부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li> <li>-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전담 특성화대학의 지정 : 초광역권 미래 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광역권에 소재 하는 기관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li> </ul> |
| <p><b>미래혁신산업<br/>인재에 대한<br/>지원 및 특례</b><br/>(안 제7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주거 및 체류 관련 지원 :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해 정착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고, 무상임대주택,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운영비 지원 및 미래혁신산업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입국·영주·귀화 특례를 지원</li> </ul>                                                                                          |
| <p><b>초광역권 자생적<br/>정주여건 조성을<br/>위한 지원</b><br/>(안 제8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권에 수도권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 문화·관광의 육성 정책 및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계획 수립</li> </ul>                                                                                                                                |
| <p><b>부 칙(안 부칙)</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li> </ul>                                                                                                                                                                                                               |

## 2.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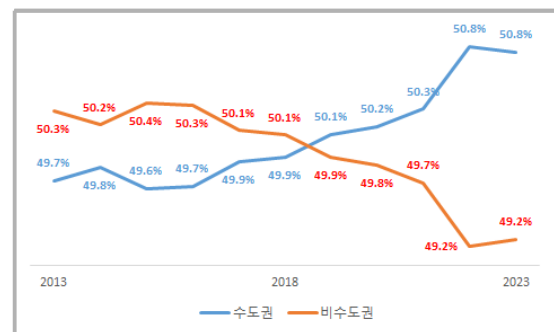
20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78%가 수도권에 거주하여<sup>1)</sup> 수도권 쏠림이 심하며,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의 비중은 95.5%(시장가치 기준)이고,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개수 기준)로,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sup>2)</sup>

GRDP 비중(%) 변화(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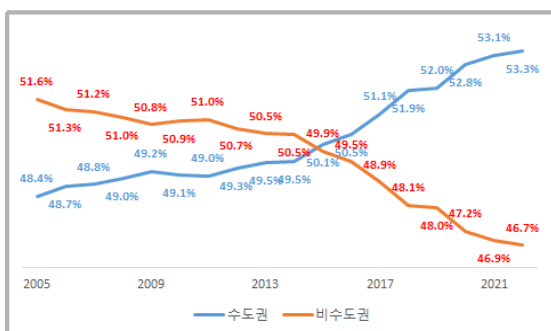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취업자 비중(%) 변화(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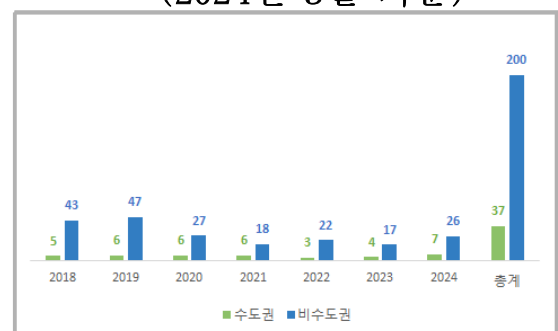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인구비중(%) 변화(2021년 기준)



출처 : 통계청

전국 시·도별 폐교 보유 현황  
(2024년 3월 기준)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1)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36,513으로 전체 인구 51,277,347명 중 약 50.78%에 해당
- 2) 한국은행,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2024. 6. 19.

또한,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입구 집중도가 2020년 50.1%에서 2070년에는 52.4%로 증가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고<sup>3)</sup>, 감사원은 합계 출산율 0.98명 가정하에 소멸 고위험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2117년에는 서울 강남구 등 전국의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sup>4)</sup>.

이러한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라 전체 시·군·구의 40%인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sup>5)</sup>으로 지정<sup>6)</sup>되었으며, 해당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인구감소의 악순환 반복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sup>7)</sup>

---

3) 국토연구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개토론회, 2020. 11. 12.

4) 감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2021)”,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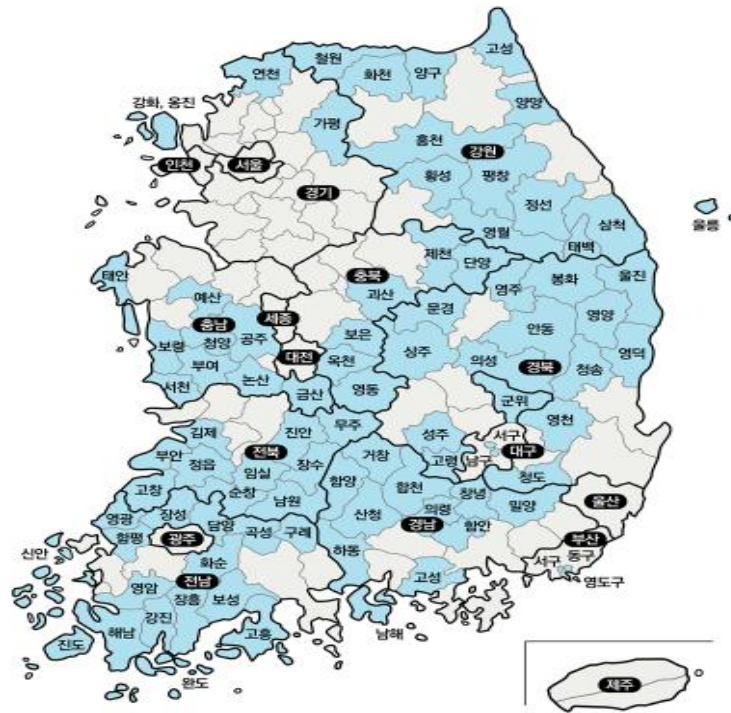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5년 주기로 지정, 2021년. 10. 최초 지정)

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2023. 11.

#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 10.) >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로 비수도권에 대한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 및 지방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비수도권별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여,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못지 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은 수도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 연구개발 활동·생산지원 인프라 등의 집중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기인하므로, 비수도권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지에 대규모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하여 집적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sup>8)</sup>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2023년 11월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sup>9)</sup>에서는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초광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sup>10)</sup>의 추진을 통해 집적경제를 실현하여 비수도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제정안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구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주체를 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 초광역별 경제생태계 구성을 위한 경제정책의 총괄적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

8) 한국은행,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2024. 6. 19.

9)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1] 참조

10)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구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미래혁신산업”이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권역별 성장잠재력을 살려 고부가가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지식·문화 집약형 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받아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11)</sup>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기·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경제·재정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러한 정부 정책과 통일성 있는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미래혁신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초광역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초광역권 내 우수 인력의 육성 및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초광역권 권역별로 차별화된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미래혁신산업 인재’로 규정하고, 해당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 정착할 경우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11)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의 육성 및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함) 등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등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함)가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제정안에 따른 계획들과 관련이 있는 계획들이 수립·시행 중이므로 해당 계획들과의 관계 및 충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동 법에 따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추진한 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정부 주도의 초광역권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와 상이한 경우 관련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초광역권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정하는 권역으로, 이는 초광역권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설정되며, 이는 초광역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도 다르지 않음.

이와 같이 초광역권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된 권역으로, 정부가 국토·경제 발전계획 등을 위해 설정하는 권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안 제5조에 따라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등에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음.

그런데 제정안은 동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초광역권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재의 권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상임대주택의 공급, 거주 및 생활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신속입국·영주·귀화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인재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여 과도한 특혜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실무적으로도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초광역권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계획을 추가 수립

할 경우 유사 계획 수립에 따른 부처 업무 혼란 및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정안에 따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업무 중복, 지역 혼선 등의 우려가 있으며, 제정안의 정부 주도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종합계획 수립은 현행 지방 주도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취지와 상충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범위가 초광역권 발전 관련 주요 분야(산업·행정·교육·문화 등)를 포괄하는 바,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계획의 내용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임.

또한, 교육부는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유치 종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2025년부터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육성 및 대학 지

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혁신산업 인재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 2. 조문별 검토

### 가. 총칙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1) 목적 및 정의 (안 제2조)

| 제 정 안                                                                                                                                                                                                                                                                                                                                                                                                                                                                                                                                                                                                                                                                                                                                                                                                                                                                                                                                            |
|--------------------------------------------------------------------------------------------------------------------------------------------------------------------------------------------------------------------------------------------------------------------------------------------------------------------------------------------------------------------------------------------------------------------------------------------------------------------------------------------------------------------------------------------------------------------------------------------------------------------------------------------------------------------------------------------------------------------------------------------------------------------------------------------------------------------------------------------------------------------------------------------------------------------------------------------------|
|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비(非)수도권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과 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li><li>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li><li>3. “자생적 경제생태계”란 권역별 특성에 맞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권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지에서 창업·취업·정착하게 되고,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말한다.</li><li>4. “미래혁신산업”이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권역별 성장잠재력을 살려 고부가가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지식·문화 집약형 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li><li>5. “미래혁신산업 인재”란 권역별로 차별화된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생산기술, 기업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li></ol> |

제정안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비(非)수도권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과 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수도권”,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미래혁신산업”,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특히 제정안은 초광역권별 미래혁신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해당 초광역권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현지에서 창업·지원·정착하게 되고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조성’으로 정의하고, 제정안 각 조문에 따라 이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초광역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정안에 따른 초광역권에 대한 정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동일한데,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정하는 초광역권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권이 권역상 동일한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생적 경제생태계”, “미래혁신산업” 및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정의에서 “권역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의미하는 “초광역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

는 바 이를 “초광역권”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제정안의 제명에 부합하도록 경제생태계 조성의 단위를 초광역권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권역별 미래혁신산업의 선정, 권역 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권역 내 정착 등 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역”은 초광역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음. 따라서 용어 정비를 통해 법문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인재”를 미래혁신산업 분야 관련 전문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안 제25조),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안 제29조), 우수 미래혁신산업 인재(안 제30조)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책무(안 제3조)

| 제 정 안                                                                                                                                                                                                                           |
|---------------------------------------------------------------------------------------------------------------------------------------------------------------------------------------------------------------------------------|
| <p><b>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b> ① 국가는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6조는 시·도지사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 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의 지방이전(안 제1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안 제16조), 교육기관의 지방이전(안 제17조)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 제 정 안                                                                                                                                                                           |
|---------------------------------------------------------------------------------------------------------------------------------------------------------------------------------|
|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①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구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면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구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관하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르면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중 어느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인구감소지역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관련이 있는 계획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sup>12)</sup>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구성에 관하여, 제2항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에 관하여 각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는 안 제2조에서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권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지에서 창업·취업·정착하게 되고,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어 1회적이 아닌 선순환 과정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5.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7. 「어촌·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등 (안 제2장: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1)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초광역권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 정 안

**제5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의 권역 내 자체 양성, 수도권 및 해외로부터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인력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금융, 주거, 교육, 행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 정 안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①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이하 “초광역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3. 시행계획의 승인
4. 초광역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2. 그 밖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시행계획의 수립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이하 “초광역권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제정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초광역권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에 따른 초광역권 위원회의 업무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으며, ‘시행계획의 승인’의 범위에 변경수립된 시행계획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다른 기관에 대한 승인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행하는 것으로, 대등한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중앙행정기관 간에 승인 절차를 두는 것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초광역권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초광역권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안 제5조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동 제정안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초광역권발전계획과 별개로 정부 주도의 초광역권 관련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와도 상충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범위가 산업·교육·문화·행정 등을 포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정안은 초광역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정부는 시·도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승인 주체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지방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7조에 따라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초광역권 발전 관련 기능을 수행 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8조에 대해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광역권 권역 중 본인의 관할이 아닌 시·군 등에 대해 지역·특구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장: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기본계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제 정 안                                                                                                                                                                                                                                                                                                                                                                                                                                                                                                                                                                                                                                                                                                                                                                                                                                                                                                                                                                                                                                                                                                                                                                                                                                                                                                                                |
|--------------------------------------------------------------------------------------------------------------------------------------------------------------------------------------------------------------------------------------------------------------------------------------------------------------------------------------------------------------------------------------------------------------------------------------------------------------------------------------------------------------------------------------------------------------------------------------------------------------------------------------------------------------------------------------------------------------------------------------------------------------------------------------------------------------------------------------------------------------------------------------------------------------------------------------------------------------------------------------------------------------------------------------------------------------------------------------------------------------------------------------------------------------------------------------------------------------------------------------------------------------------------------------------------------------------------------------|
| <p><b>제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권역별 산업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li> <li>2.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li> <li>4.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li> <li>5.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인력 유치 및 양성</li> <li>6.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가스·통신망 등의 정비·확충 등 산업 기반 조성</li> <li>7.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철도·항만 등의 정비·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li> <li>8. 그 밖에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등에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이하 “지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p> |

## 제 정 안

제2항에서 같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행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시행계획의 승인 절차, 지원시행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도지사등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신속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 제12조(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설치) ①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역별 산업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이하 “지원시행계획”이라 함)을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안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각 초광역권이 설정한 미래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R&D·인력양성·기반조성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9조제3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변경수립하는 경우에도 같음)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시 수도권 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등에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요청은 일반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의 이해관계가 있는 시·도지사등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이를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2조는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업무로 미래혁신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안 제12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혁신산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초광역권 발전에 관한 다수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충실한 안전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sup>13)</sup>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sup>14)</sup>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에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기반 조성 등  
(안 제4장: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안 제13조 및 제14조)

| 제 정 안                                                                                                                                                                                                                                                                                                                                                                                                                                                                                                                                                                                                                                                                                                                                                                                                                                                                                                                                                                                                                                                                                                                                                                                                                                                                                                                                         |
|-----------------------------------------------------------------------------------------------------------------------------------------------------------------------------------------------------------------------------------------------------------------------------------------------------------------------------------------------------------------------------------------------------------------------------------------------------------------------------------------------------------------------------------------------------------------------------------------------------------------------------------------------------------------------------------------------------------------------------------------------------------------------------------------------------------------------------------------------------------------------------------------------------------------------------------------------------------------------------------------------------------------------------------------------------------------------------------------------------------------------------------------------------------------------------------------------------------------------------------------------------------------------------------------------------------------------------------------------|
| <p><b>제13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권역 또는 시·도의 미래혁신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혁신산업의 잠재력</li> <li>2.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li> <li>3.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li> <li>4.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미래혁신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의 창업 및 이전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b> ①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을 증설 또는 설치하는 기업 또는 초광역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업용수도</li> <li>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송·변전설비</li> <li>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li> <li>4. 그 밖에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 </ol> <p>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p> |

## 제 정 안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특성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초광역권별로 권역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여 초광역권 특화발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3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권역 또는 시·도의 미래혁신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제목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제정안의 취지를 보았을 때 권역이 아닌 초광역권에 선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초광역권산업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선정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초광역권사업의 선정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5)</sup>

동 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권산업과 유사하므로 미래혁신산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송·변전설비는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다량의 용수확보와 용수공급을 위한 대규모 시설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반시설 지원 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보다는 완화된 지원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기업·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방이전 등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제 정 안

**제15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방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 미래혁신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기관의 지방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교육기관이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관련 시설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미래혁신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및 투자의 확대)**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및 육성 등을

## 제 정 안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의 추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의 발전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이 지방 초광역권으로 이전 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지방 초광역권으로의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인구과밀 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 및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sup>16)</sup>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sup>17)</sup>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마.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안 제5장: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창업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제 정 안                                                                                                                                                                                                                                                                                                                                                                                                                                                                                                                                                                                                                                                                                                                         |
|-------------------------------------------------------------------------------------------------------------------------------------------------------------------------------------------------------------------------------------------------------------------------------------------------------------------------------------------------------------------------------------------------------------------------------------------------------------------------------------------------------------------------------------------------------------------------------------------------------------------------------------------------------------------------------------------------------------------------------|
| <p><b>제20조(자금 지원 등)</b>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li> </ol> <p>③ 국가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b>제21조(창업지원)</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p> |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 정 안

화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용자
2. 미래혁신산업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세무·회계 등에 관한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미래혁신산업 관련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나 자금의 용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창업자금의 지원 및 용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초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sup>18)</sup>에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sup>19)</sup>, 「지방세특례제한법」<sup>20)</sup>에서 규율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와 같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3조와 같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더라도 각 특례제한법에서 국유

---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재산특례 및 조세특례를 규율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sup>21)</sup>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sup>22)</su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sup>23)</sup>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고용보조금 지원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특정 권역 전체의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기존 제도와도 중복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조세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sup>24)</sup>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2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487p 및 500p.

2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4)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성장거점으로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2023년말에 도입하였고 2024년도에도 대폭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유사한 목적의 다른 조세감면 신설 시 기회발전특구 지원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대료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 특례를 두기보다는 공유재산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20조제3항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으로, 특정 산업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재단 설립 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임.

## 2)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 (안 제24조)

| 제 정 안                                                                                                                                                                                                                                                                                                                                                                                                                                                                                                                                             |
|---------------------------------------------------------------------------------------------------------------------------------------------------------------------------------------------------------------------------------------------------------------------------------------------------------------------------------------------------------------------------------------------------------------------------------------------------------------------------------------------------------------------------------------------------|
| <p><b>제24조(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래혁신산업 기업 및 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따라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미래혁신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li> <li>2. 미래혁신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li> <li>3. 미래혁신산업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li> <li>4. 그 밖에 미래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안 제24조는 시·도지사가 미래혁신산업 기업 및 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혁신산업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24조 제목은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으로 하고 있는데, 안 제24조제1항은 설립할 수 있는 센터의 명칭을 규정하거나 약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혁신산업센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시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2조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바.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안 제6장: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시행 (안 제25조)

| 제 정 안                                                                                                                                           |
|-------------------------------------------------------------------------------------------------------------------------------------------------|
| 제25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장관은 미래혁신<br>산업 인재를 자체 육성하고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br>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br>이행·점검하여야 한다. |

안 제25조는 교육부장관이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자체 육성 및 외부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  
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의 양성 및 해외로부터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 간 유사·중복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5년 단  
위)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5년 단위)은 모두 계

획의 수립 기간 단위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육성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및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제정안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육성 및 대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5)상으로도 지방대학 및 지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미 수립·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의 계획 수립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및 해외 우수 인력 발굴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제 정 안

**제26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미래 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을 말한다) 등을 신설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미래혁신산업 인재 자녀의 교육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전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인력의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벤처·기업창업 지원 등과 관련된 산업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육성 및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등을 위해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안 제26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전담 특성화대학의 지정(안 제27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안 제28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초광역권별 미래혁신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해당 초광역권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현지에서 창업·지원·정착하게 되고,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목으로 하여 초광역권별 특성에 맞게 선정된 미래혁신산업의 인재에 대한 지역 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대상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수도권에서 거주 및 생산·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지방 이전 유인을 제공하고, 초광역권 내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나,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육성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교육부는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sup>26)</sup>하여 보육지원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평가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역의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학생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sup>27)</sup>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2조<sup>28)</sup>에 따라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등 국가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sup>29)</sup>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6)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사.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안 제7장: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제 정 안                                                                                                                                                                                                                                                                                                                                                                                                                  |
|------------------------------------------------------------------------------------------------------------------------------------------------------------------------------------------------------------------------------------------------------------------------------------------------------------------------------------------------------------------------------------------------------------------------|
| <p><b>제2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b>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 내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생산기술, 기업경영 등 고부가가치 우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를 권역 내 정착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다.</p> <p>③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명예선양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b>제30조(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등)</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미래혁신산업 인재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안정을 위한 무상임대주택 공급</li> <li>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과 운영비 지원</li> <li>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p><b>제31조(해외 우수인력 신속입국·영주·귀화 특례 지원)</b>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혁신산업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권역별 미래혁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속한 유치가 필요한 해외인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주자격·귀화·사증발급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다.</p> <p>③ 특례에 의해 입국한 해외 우수인력은 권역별로 소재한 대학 또는 기업의 연구소에 우선 배치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p> |
| <p><b>제32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고용지원)</b> ① 정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p>                                                                                                                                                                                                                                                       |

## 제 정 안

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혁신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인턴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지원 사업
2. 미래혁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7장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조세 감면 등(안 제29조),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안 30조), 해외 우수인력의 신속입국·영주·귀화 특례 지원(안 제31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고용지원(안 제3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엔지니어·기업경영 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지방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 활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안 제29조와 안 제30조는 지원 대상을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과, 미래혁신산업 인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정의에 따라 미래혁신산업 인재는 초광역별로 선정된 미래혁신산업 분

야에 대한 기술·지식 등을 갖춘 우수·전문 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래혁신산업 인재”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9조제2항은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조세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2조와 마찬가지로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29조제3항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명예선양(宣揚)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지원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명예선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서 그 지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30조는 초광역권 내 정착한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무상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등의 지방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의 무상공급 등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제정안과 성격이 유사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지원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은 기업 본연의 역할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법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거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sup>30)</sup>

또한, 인재고용지원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속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30) 일자리계층(창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대상 공공임대(시세의 35~90%) 공급 중으로 2023년까지 총 86개 단지, 16,699호 공급 중

아. 초광역권 자생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안 제8장: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초광역권 생활인프라 조성 및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제 정 안                                                                                                                                                                                                                                                                                                                                                                                                                                                                                                                                                                                                                                                                                                                                                                                                               |
|---------------------------------------------------------------------------------------------------------------------------------------------------------------------------------------------------------------------------------------------------------------------------------------------------------------------------------------------------------------------------------------------------------------------------------------------------------------------------------------------------------------------------------------------------------------------------------------------------------------------------------------------------------------------------------------------------------------------------------------------------------------------------------------------------------------------|
| <p><b>제33조(초광역권 생활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원)</b>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권에 수도권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교통·복지·문화·의료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원·관리·투자를 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자녀 보육, 교육, 통합돌봄, 방과후 활동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b>제34조(초광역 단위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b>제35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b>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

안 제8장은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원(안 제33조), 초광역 단위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안 제34조),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안 제35조)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생활 인프라의 개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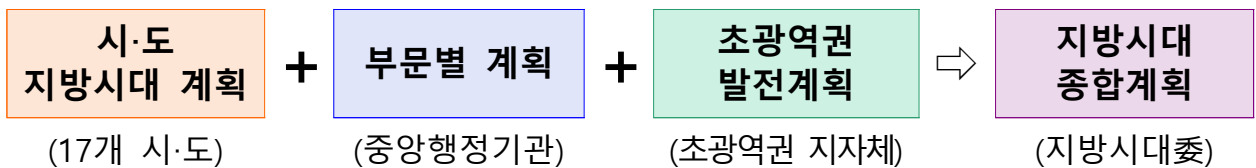
다만, 안 제33조 및 안 제34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별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광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3조와 제34조의 조 제목을 살펴보면 각종 지원의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초광역권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2 |

## 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 ~ 2027)

□ (의의) 지방위 주도로 지방·중앙정부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범정부 계획**
-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추진

□ (구성) ①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③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수립

□ (주요내용) <sup>(비전)</sup>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sup>(목표)</sup>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sup>(4대가치)</sup>자율·공정·연대·희망

- (5대 전략) ①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지방시대추진 중점 추진과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 융합특구, 문화특구), 보건의료 혁신, 지방의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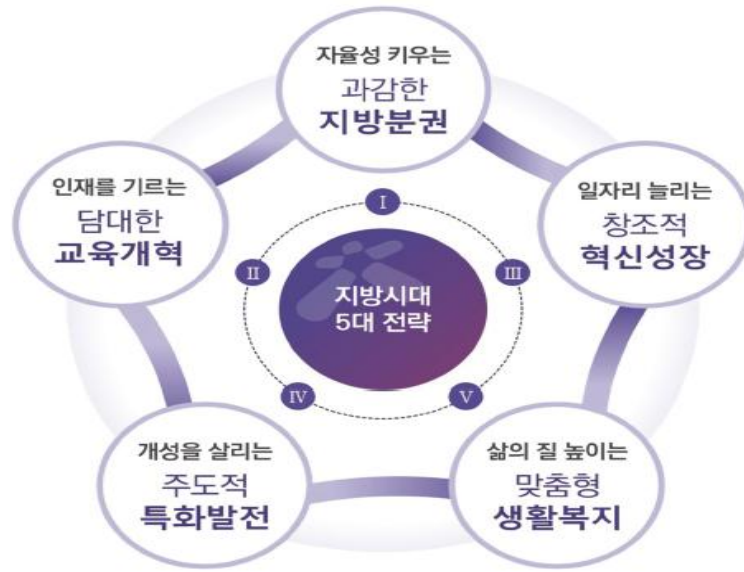
□ (수립 및 이행)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23.9.14 지방시대 선포식)에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마련하여 국무회의 승인(10.30.) 거쳐 발표(11.2.)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설정 지자체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 초광역권발전계획 개관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상 지방시대 5대 전략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상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



## 2. 지방시대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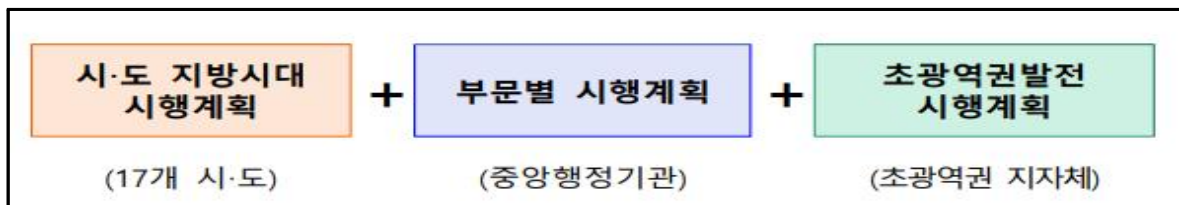
### □ 시행계획의 성격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 \* '23.10.30.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완료
-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당해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 계획**

### □ 시행계획의 구성

- 지방정부의 '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의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 '지방 주도 균형 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마련
  - \*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중앙정부의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 과제, 지방정부의 역점과제, 초광역권 지자체 협력과제'의 **2024년도** 연차계획을 종합하여 제시

## □ 초광역권(제2조)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 □ 초광역권산업(제2조)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송부

### ○ (지방시대위원회)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심의·의결 및 송부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2조) ①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지침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작성·제출

### ○ (초광역권설정 지자체)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시행령 제12조)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협의·조정)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작성시 다른 중앙부처(예산사업의 경우 기재부 포함), 시·도와 협의·조정 진행 필요

(시행령 제13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